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안내사항

Q

1.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미술진흥법」 제18조에 따라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Q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미술서비스업을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3. 업종 중복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Q

4. 미술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미술진흥법」 제2조제9호는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미술품의 중개, 대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온라인·오프라인 등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Q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개인 딜러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미술서비스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개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6.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는 영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중 주된 영업장(본점)이 있는 경우 본점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7. 카페에서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미술품 판매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8. 해외 화랑의 국내 지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국내에서 미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Q

9.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업종을 동시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서상 복수 업종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10. 작가가 본인 작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국내에서 미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Q

11. 개인 소장자가 일회적으로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단순한 일회성 거래는 일반적으로 미술서비스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매·중개 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계속성·반복성·영리성을 가지고 영업)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12. 팝업이나 행사성 전시 등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지속적·반복적이지 않은 팝업, 행사성 전시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매년 개최되는 아트페어 등은 신고 대상입니다.

Q

13.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 단체 등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고유번호를 제출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14. 박물관·미술관법 상 등록 미술관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미술진흥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15.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 그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술관 등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미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16. 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고·변경신고·폐업신고의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지위승계신고는 즉시 처리됩니다.

Q

17.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신고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

18.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신고사항에 대해 변경할 경우 변경 전 신고하여야 합니다.

Q

19. 미술서비스업자의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1) 미술 창작·기획 또는 미술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됩니다.
- 2)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을 하는 자는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에 대한 내역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 3) 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미술품의 낙찰가격과 경매대금의 완납 여부를 공시해야 합니다.
- 4) 미술품 경매업자는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참여하거나 공정한 경매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5) 자신이 소유·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관리하는 미술품을 자신이 실시하는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경매의 실시에 앞서 참가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합니다.

Q

20. 자신이 유통한 미술품의 내역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유통한 미술품의 종류, 거래 일시, 작품명, 작가명, 거래금액, 판매자 등이 드러나게 작성하여야 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일시	판매작품 (있을 시 에디션 번호)	판매금액	판매자	작가	작품사진

Q

21. 미술품 경매업의 경우, 완납 여부 등의 공시는 어떻게 하나요?

A

누구나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낙찰일, 완납일 기준 3개월 이내 자사 홈페이지에 완납 여부 게시
또는 낙찰일, 완납일 기준 3개월 이내 예술경영지원센터 자료
제출(공문 발송)

Q

22. 이해관계 등이 있는 작품의 경우 경매 참가자에게 이를
어떻게 고지하나요?

A

자사 홈페이지 경매 안내 시 '해당 작품(작품명)은 「미술진흥법」 제1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작품입니다.' 등의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Q

23. 감정업자의 의무

A

- 1) 미술품 감정업자는 미술품의 감정을 의뢰한 자나 다른 미술서비스업자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정을 해야합니다.
- 2) 허위 감정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3) 자신이 소유·관리하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자가 소유·관리 또는 유통시키는 미술품으로서 불공정한 감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감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에 따른 감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5) 감정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6) 감정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Q

24. 유사감정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호당 가격 확인서(작품의 크기[호수]를 기준으로 작가의 통상적인 가격 수준을 확인해 주는 참고용 문서) 등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이 아닌 감정서는 모두 유사감정서입니다. 유사감정서를 감정서인 것처럼 발급하는 행위는 미술진흥법 제15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미술품 감정을 받을 때 미술서비스업 신고를 한 미술품 감정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양식에 맞추어 발급한 감정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Q

25. 중개만 하는 플랫폼도 진품증명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A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중개 하는 자도 대여·판매업자로서 진품증명서 발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와 중개자 간 계약 또는 이용약관 등에 따라 발급 주체와 책임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